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. 2. 17 선고 2021가합35 판결 [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. 20.

판 결 선 고 2022. 2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10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13. 1. 15. 피고로부터 거제시 C 전 2,459㎡를 계약금 50,000,000원, 중도금 250,000,000원, 잔금 200,000,000원, 합계 500,000,000원에 매수하면서 잔금을 위 부동산에 관한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고,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3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 이후 위 부동산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, 원상회복으로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한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재판장 판사 김현범, 판사 차선영, 판사 정 혁